

제405회 임시회

'22. 11. 23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## 3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의 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확대를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법인인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함에 따라 그 주요 사업, 명칭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

## 4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변경(안 제명)
  - 제명 “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”를 “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”로 변경
- 목적 및 주요사업에 “평생교육진흥사업”을 신설(안 제1조, 제4조)
- 진흥원 설립의 근거 법령으로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추가(안 제2조)
- 기존 사무국을 폐지하고, 진흥원의 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(안 제6조)

-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7조)
  - 종전의 “기금”을 그 성격에 따라 “재산 및 기금”으로 구분
- 종전부터 구성되어 온 “기금”은 “장학 및 인재양성사업”에만 사용하도록 명시(안 제9조)
- 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16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### 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안은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 추진에 따라 주요 사업, 명칭 및 조직 등을 정비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,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하는 바, 개정안의 제명을 「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 할 것임.
- 조례안은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으로 설립되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,

기존 충북인재양성재단 목적 및 주요사업에 더해 “평생교육진흥사업”을 신설(안 제1조, 제4조)하고, 진흥원 설립의 근거 법령으로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추가(안 제2조)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개정안(안 제9조)은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되더라도 당초 기금의 목적에 맞게 “진흥원의 기금은 장학 및 인재양성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”고 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됨에 따라 그 주요 사업, 명칭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.
- 조례개정을 통해 통합법인으로 출범하는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추진 체계가 안정화 되고, 도민의 역량증진과 삶의 질이 높아져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